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「민법」(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과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4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른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중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부터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, 만 나이 정착을 위해 금천구 자치법규 중 나이와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정비대상 : 조례 13개

연번	관리부서명	조례명	정비내용
1	교육지원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(제2조제1호)	만6세~12세 → 6세~12세
2	일자리청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(제2조제2호, 제5조제2호)	만 36세 → 36세
3	일자리청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(제18조제6항제1호)	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→ 19세 이상 39세 이하
4	일자리청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(제2조제3호)	만 39세 → 39세
5	복지정책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(제4조제1호)	만 65세 → 65세
6	어르신장애인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(제2조제1호, 제5조, 제6조제1항)	만 100세 → 100세
7	어르신장애인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(제2조제1호)	만 65세 → 65세
8	가족정책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(제22조의3제2항)	만6세 → 6세
9	아동청소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(제2조제1호 및 제4호, 제4조)	만 18세 → 18세
10	주차관리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(제2조의2제1항제11호)	만13세 → 13세
11	보건정책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(제3조제2항제6호의2)	만65세 → 65세
12	건강증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(제2조제1항)	만 65세 → 65세

연번	관리부서명	조례명	정비내용
13	건강증진과	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5조)	만 65세 → 65세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